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의무적 친권상실심판 및 후견인변경심판 청구 사유에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추가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친권상실의 청구 등 요청서 서식에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저지른 경우’를 추가하고,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호”를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이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이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을 알려주고 별지 제8호의2 서식 상단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긴급임시조

치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의2서식 상단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 하단의 긴급임시조치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통지서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결정의 변경”을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를 “사법경찰관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로,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신청을 검토하여 그 청구를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임시조

치 연장·취소·변경 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2항 전단에 따라
검사가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의2) 제1항 중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 제31호의6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1호의3서식”을 “별지 제31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별지 제31호의4서식”을 “별지 제31호의8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1호의5서식”을 “별지 제31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1호의6서식”을 “별지 제31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31호의7서식”을 “별지 제31호의11서식”
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 ① 검사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르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 기간의 연장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의4서

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취소·변경 청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23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3항”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31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1호의6서식, 별지 제31호의7서식, 별지 제31호의8서식, 별지 제31호의9서식, 별지 제31호의10서식 및 별지 제31호의11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별지 제31호의4서식 및 별지 제3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친권상실의 신고 등 청구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청구요청인	기 관 명				
	성 명		직 급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피해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나이)		전화번호		
	주 소				
피해아동	성 명				
	생년월일(나이)		전화번호		
	주 소				
요청 내용	[]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				
	[]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 사유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저지른 경우(법 제4조제3항) 사건번호(형사사건):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른 경우(법 제5조) 사건번호(형사사건):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법 제6조) 사건번호(형사사건):				
후견인 선임 에 관한 의견	성 명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이 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요청하오니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검찰청장 귀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 (연고자 등)

(00-0000-0000)

제 0000-00000 호

수 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 목: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등을 분리·인도하여 아래 연고자가 보호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피해아동 1	성명		생년월일(나이)	
	전화번호			
연고자	성명			
	주소			
	피해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피해아동 2	성명		생년월일(나이)	
	전화번호			
연고자	성명			
	주소			
	피해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피해아동 3	성명		생년월일(나이)	
	전화번호			
연고자	성명			
	주소			
	피해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통보인 인적사항	성명		소속	
	전화번호		직급	

소속:

사법경찰관리(주무관)

(서명 또는 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 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서명란의 동의자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응급 조치 결과 보고서

(00-0000-0000)

제 0000-00000 호

수 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제 목: 응급조치 결과 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 조치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다른 가정구성원	성명: 주거:	행위자와의 관계: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응급조치 일시 및 장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응급조치의 내용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법 제12조제1항제1호)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법 제12조제1항제2호)		
	[]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법 제12조제1항제3호)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법 제12조제1항제4호)		
	[]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법 제12조제1항제5호)		
응급조치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직 급	
피해사실의 요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소속:

사법경찰관리(주무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긴 급 임 시 조 치 결 정 서

제 0000-00000 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피해아동등과 의 관계	
	주 거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긴급임시조치 내용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주거 []학교·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밖의 장소()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긴급임시조치 일시 및 장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 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년 월 일

소속: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긴급임시조치 확인서(아동학대)				
행 위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본인은 경 에서 아래 항목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한 접근금지(전화,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 확인인 (인) 위 대상자에 대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하면서, 위 결정 내용을 고지하였음. (고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사법경찰관(리) (인) ※ 아래 긴급임시조치 통지서는 잘라서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르는 선) ----- 긴급임시조치 통지서(아동학대)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한 접근금지(전화,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사항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결정시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사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 (인)				

210mm × 297mm(백상지 80g/㎡)

임시조치 []취소 []변경 신청(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청구) 내용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 신청(법 제21조제3항)	
	[]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신청(법 제22조제1항)	
	[]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임시조치 종류의 변경 신청(법 제22조제1항)	
	[]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등이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 청구(법 제22조제4항)	
신청(청구)인	성 명		
	자 격		
	[]	피해아동등 []	피해아동등의 법정대리인 []
	[]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 []
	[]	시장·군수·구청장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거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재 임시조치의 내용	변 호 사		
	사건번호		
	결정일자		
변경을 희망하는 임시조치의 내용	결정내용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를 희망하는 이유		별지와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1항·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법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임시조치 []연장 []취소 []변경 청구서

(00-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법원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검 사 검 사 (서명 또는 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조치의 []연장 []취소 []변경을 청구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피해아동등과 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변 호 사			
현재 임시조치의 내용	사건번호			
	결정일자	년	월	일
	임시조치의 종류			
	임시조치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개월)
(변경시) 변경 청구의 내용	임시조치의 종류			
	적용법조			
(연장시) 연장 일시	연장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이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서명 또는 인)		

임시조치 []연장 []취소 []변경 신청서

(00-0000-0000)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 []취소 []변경을 신청하니 아래와 같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변 호 사					
현재 임시조치의 내용	사건(송치)번호					
	결정일자	년 월 일				
	임시조치의 종류					
	임시조치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개월)				
(변경시) 변경 청구의 내용	임시조치의 종류					
	적용법조					
(연장시) 연장 일시	연장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이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소속: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임시조치 []연장 []취소 []변경 신청 기 각

(00-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경찰서장
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

제 목: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신청 기각 검 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연장 []취소 []변경 청구의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피해아동등과 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변경시) 변경 신청의 내용	임시조치의 종류			
	적용법조			
(연장시) 연장 신청 일시	연장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이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일시		. . . :		. . . :		
신청자 관직 및 성명						
아동학대 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직업					
	주거					
죄명						
임시조치	검사기각	. . . :		. . . :		
	판사기각	. . . :		. . . :		
	발부	. . . :		. . . :		
	재신청	신청	. . . :		. . . :	
		검사기각	. . . :		. . . :	
		판사기각	. . . :		. . . :	
		발부	. . . :		. . . :	
임시조치 연장·취소· 변경 신청 내용	취소		. . . :		. . . :	
	연장	전				
		후				
	변경	전	. . . :		. . . :	
후		. . . :		. . . :		
항고	항고제기일		. . .		. . .	
	등본송부일		. . .		. . .	
	결정일		. . .		. . .	
	결정내용					
재항고	재항고제기일		. . .		. . .	
	결정일		. . .		. . .	
	결정내용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월 일		년 월 일		
주임검사							
신청관서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주 거						
죄 명							
임시조치 연장·취소· 변경 청구 및 결정	사법 경찰관	신청	 :		 :		
		기각	 :		 :		
	검사청구		 :		 :		
	취 소		 :		 :		
	연장	전					
		후					
	변경	전	 :		 :		
		후	 :		 :		
	기 각		 :		 :		
	수령연월일		 :		 :		
	교부연월일		 :		 :		
	수령자의 관직 성명 날인						
	항고	항고제기일					
		등본송부일					
결정일							
결정내용							
재항고	재항고제기일						
	결정일						
	결정내용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지 방 검 찰 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지방검찰청

제 목: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검 사

(서명 또는 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아래 아동 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피해아동등 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변 호 사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내용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법 제47조제1항제1호)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법 제47조제1항제2호)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법 제47조제1항제3호)		
	[]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법 제47조제1항제4호)		
	[]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법 제47조제1항제5호)		
	[]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법 제47조제1항제5의2호)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법 제47조제1항제6호)		
	[]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47조제1항제7호)		
	[]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47조제1항제8호)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법 제47조제1항제9호)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서명 또는 인)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취소 []변경 청구서

(00-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법원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보호명령 연장·취소·변경 청구 검 사

(서명 또는 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취소 []변경을 청구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피해아동등과 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변 호 사			
현재 보호명령의 내용	사건번호			
	결정일자	년	월	일
	보호명령의 종류			
	보호명령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개월)
(변경시) 변경 청구의 내용	보호명령의 종류			
	적용법조			
(연장시) 연장 일시	연장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
피해사실의 요지 및 보호명령의 연장·취소·변경이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동처 호	년 동처 호
주임검사			
아동학대 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직업		
	주거		
피해아동	성명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변호사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및 결정	검사 청구	. . . :	. . . :
	보호명령결정	. . . :	. . . :
	보호명령기간		
	일시보호 명령 여부		
	기각	. . . :	. . . :
향고	향고제기일	. . .	. . .
	등본송부일	. . .	. . .
	결정일	. . .	. . .
	결정내용		
재향고	재향고제기일	. . .	. . .
	결정일	. . .	. . .
	결정내용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취소·변경 청구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동 처 호	년 동 처 호
주 임 검 사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주 거		
피해아동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변 호 사		
피해아동 보호명령 연장청구 및 결정	검사 청구	. . . :	. . . :
	보호명령결정	. . . :	. . . :
	보호명령기간		
	일시보호 명령 여부		
	취 소	. . . :	. . . :
	연 장		
	변 경	. . . :	. . . :
	기 각		
항고	항고제기일	. . .	. . .
	등본송부일	. . .	. . .
	결정일	. . .	. . .
	결정내용		
재 항고	재 항고제기일	. . .	. . .
	결정일	. . .	. . .
	결정내용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을 <u>보호</u> 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u><신 설></u> <u><신 설></u> <u>② (생략)</u> 제5조(긴급임시조치) ①·② (생략) <u><신 설></u>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 ----- ----- ----- ----- ----- <u>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이 보호</u> ----- -----. <u>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이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u> <u>③ 영 제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u> <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 제5조(긴급임시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u>

<신 설>

③ · ④ (생 략)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 ③
(생 략)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을 알려주고 별지 제8호의2서식 상단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의2서식 상단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 하단의 긴급임시조치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통지서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임시조치 신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에 대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임시조치를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 ~ ⑩ (생략)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피해 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illegible]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

----- 법 제22조제4항 -----

따른다.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도 같다.

② 검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

-----.

② ----- 법 제22조제2항-----
-----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
----- 사법경찰관이 법 제22
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
-----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

③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신청을 검토하여 그 청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하

<신 설>

<신 설>

고, 제2항 전단에 따라 검사가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취소 또
는 종류의 변경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
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
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
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2(검사의 피해아동보호
명령 청구 등) ① 검사가 법 제4
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
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르고, 법 제
50조제3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
기간의 연장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
의4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피
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취소·변경 청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3(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① -----

----- 별지 제31호의6서식-----.

② -----

----- 별지 제31호의7서식-----.

③ -----

----- 별지 제31호의8서식-----.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
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5서
식에 따른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
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
의6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항고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④ -----

----- 별지 제31호의9서식
-----.

⑤ -----

----- 별지 제31호의
10서식-----
-----.

⑥ -----

----- 별지
제31호의11서식-----.